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 등의 급부·지원 신청의 편의 제고 및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납세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 가능 기관 및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제공 절차를 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 신고가격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신고 대상이 되는 우편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등(안 제141조의10, 제141조의11 및 별표2의2 신설)

1) 납세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부·지원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청이 납세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무역·외환 관련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관세청 및 세관이 취득한 납세의무자 관련 정보로 구체화함.

3)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나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방지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관련 업무담당자의 지정,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등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안 제258조)

1)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

품의 거래 정보를 물품수령인의 성명, 통관고유부호, 물품의 품명·수량 등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함.

* 플랫폼 기업: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증개를 하는 자

2)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플랫폼 기업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물품의 품명, 납부세액,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라.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안 제261조의제4호의2 신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반입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수출입신고대상에 포함함.

마.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안 제276조의2 신설)

1)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 목적·기간 및 사용자 등이 포함된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세 무역제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안 별표 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단일간이세율 구간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종전의 20~55%에서 15~47%로 인하함.

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아목4) 신설, 안 별표 5 제4호)

- 1) 탁송품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해서도 과세가격결정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제5항 또는 제7항”을 “제6항 또는 제8항”으로, “110”을 “1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이란 “행위”란으로, “경우”를 “행위”로 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중 “있기”를 “있기 45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106조제4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6.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공 또는 수리를”을 “수리를”로, “가공 또는 수리에”를 “수리에”로 한다.

제131조제2항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을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제141조의10 및 제141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10(과세정보의 제공기관 및 제공범위)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1. 그 밖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심사를 위해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 ②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위임

-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이 출연·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정보의 범위는 별표2의2와 같다.
- 제141조의11(과세정보의 요구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사용목적·내용,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지원 사업명 및 당사자 동의 여부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당사자의 동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

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제1항의 신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141조의1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공유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공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

⑤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가 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즉시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해

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한 이후에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3조의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를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4조제5호 중 “법 제124조”를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으로 한다. 제144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에”를 “변호사, 관세사 등으로서 관세·법률 분야에”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무사, 교수 등 조세·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라. 본부세관의 세관장

마. 관세 또는 통관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해당 세관장이 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제14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2명”을 “3명으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2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
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
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사. 관세·법률·재정에 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아.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
청장이 지정하는 9명 이내의 사람

제144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
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하며, 같
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제1항에 따른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을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하
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함”을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다음”으로, “안
건”을 “구분에 따른 안건”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로 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제1항제2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위원

제144조의3제7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
과”를 “해당 위원장 및”으로, “사람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
다”로 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안건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안
건

제144조의3제8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나. 제1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납
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
여 지정하는 7명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제1항제2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납

세자보호관인 위원 의견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7명

제144조의4를 제144조의5로 하고, 제1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4(관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118조의4제9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 제144조의3제1항제1호 나목·다목·마목에 해당하는 31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1항제2호 나목·다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37명 이내의 사람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해당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관세청 : 제144조의3제1항제2호아목의 위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2. 본부세관 : 해당 본부세관의 세관장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일 7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⑪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4조의3제5항·제6항·제11항·제12항·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2조 본문 중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을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으로 한다.

제2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으로 한다.

제221조제1항 중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7장제5절에 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제236조의5를 삭제한다.

제2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세운송 또는”을 “보세운송,”으로, “자에게 통보”를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자가”를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물품

의 화주”로, “아니하였음”을 “않았음”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2조제1항 중 “된”을 “되거나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로, “사실”을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로, “허용하여야”를 “허용해야”로 한다.

제246조제8항 중 “제6항 각 호”를 “제7항 각 호”로 한다.

제258조의 제목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을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물품의 결제금액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과 물품검사를 위해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

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에 제공할 것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할 것

④ 법 제2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제259조의5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5조제1항 본문 중 “공휴일 또는”을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76조의2, 제276조의3, 제283조의2 및 제2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3.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사용기간 및 사용자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용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신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신청 이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관세·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3조의3(채납한 횟수 및 채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채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채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7
72만 1천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8만 8천4백5십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별표 2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18
21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세율(%)란 중 “20”을 “15”로 하고, 같은 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	관세청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	-----	------------------------------------	-----	--

별표 3 비고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인 경우(제6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별표 5 제3호아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		5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별표 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세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으로 하고, 같은 표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자료 중”을 각각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제11호의 자료”를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제출된 자료를”을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로 한다.

가.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7조의4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표 5 제4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37조의4제1항”을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제31조의5
제1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함께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
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지 않고 가목1)부터 3)까지 중 가장 높은 과
태료로 산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
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1조의10, 제141조의11, 제141조의12, 제265조의3, 제276조의2,
별표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
제236조의5 및 제2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수입물품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에 관
한 적용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기간 산정 시 제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
제1항·제3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사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5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관세사법 제29조제4항에 의해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1호 및 비

고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격약속 제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 45일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의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 범위(제141조의10제3항 관련)

번호	관련 법령	과세정보 범위
1	「관세법」	가. 법 제14조부터 제48조까지에 해당하는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강제징수, 가격신고,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나. 법 제49조부터 제87조까지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양허관세에 대한 조치, 간이세율등의 적용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다. 법 제88조부터 제109조까지에 해당하는 관세의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라. 법 제133조부터 제153조까지에 해당하는 운송수단, 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마. 법 제154조부터 제212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유치·매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바. 법 제213조부터 제225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세운송 및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사. 법 제226조부터 제261조까지에 해당하는 원산지의 확인, 통관의 제한, 유통이력 관리 및 수출·수입·반송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에 해당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정산·환급, 납세증명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환급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3	「자유무역협정의 이	가, 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의 적

	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나. 법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해당하는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다. 법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에 해당하는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라. 법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에 해당하는 통관특례, 관세 상호협력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4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106조·제106조의9·제118조·제118조의2·제121조의3·제121조의5·제121조의10부터 제121조의14까지, 제126조의7 및 제140조에 해당하는 관세의 감면·추징과 관련된 조세특례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5	「외국환거래법」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해당하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된 환전·송금·재산반출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6	「대외무역법」	법 제52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비고 :

- 1 과세정보의 범위는 각 호의 정보 중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 2 위 표의 과세정보 중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의3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법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77조의3 본문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에 대한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인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

표) ①・② (생략)	표) ①・② (현행과 같음)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	또는 제8항-----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	③ -----	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
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	----- 120 --
하는 것으로 한다.	-----.	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	-----
1.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	1.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	한 이윤 및 일반경비	-----
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에	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해당할 것	하 이 조에서 “품목번호”라 한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	⑧ -----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공	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	----- 제7항-----
	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	-----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	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
	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
	아니하다.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	-----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
등) ① ~ ④ (생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	-----.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⑤ -----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	-----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	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	-----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	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	-----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	-----	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
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	-----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	제39조(가산세) ① ~ ③ (생략)	제39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	1. -----		같음)
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	④ -----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 제6항	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 행위”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⑤ (생 략)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행위-----.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 있기 45일 -----

제출해야 -----.

송부해야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⑤ ~ ⑧ (생 략)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생 략)

②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문기관 기술 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6.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 않는다.

1. 2. (현행과 같음)

3. 수리를 -----

----- 수리에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
(생략)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

-----.

제141조의10(과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범위)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0.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1. 그 밖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심

사를 위해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이 출연·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세청장이

<신 설>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정보의 범위는 별표2의2와 같다.

제141조의11(과세정보의 요구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사용목적·내용,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지원사업명 및 당사자 동의 여부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동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제1항의 신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141조의1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공유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공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

⑤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가 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즉시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한 이후에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생략)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 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 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부 분에 대하여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 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 인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8조제5항에 따른 신 청이 있는 경우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 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 ----- ----- ----- -----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 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 점 등이 이미 법 제124조에 따 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 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 일한 경우	5. ----- ----- ----- 법 제118조의4제9 항 전단----- ----- ----- -----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 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 ----- -----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 음 각 목의 사람	1.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으로서 관세·법률·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 당 세관장이 성별을 고려 하여 위촉하는 17명 이내 의 사람	나. 변호사, 관세사 등 관세· 법률 분야에 ----- ----- ----- ----- -----

<u><신 설></u>	다. <u>세무사, 교수 등 조세·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u>
<u><신 설></u>	라. <u>본부세관의 세관장</u>
<u><신 설></u>	마. <u>관세 또는 통관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해당 세관장이 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u>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u>5명</u>	나, ----- ----- ----- ----- <u>7명</u>
다.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u>2명</u>	다. ----- ----- ----- ----- ----- <u>3명</u>

라.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u>2명</u>	라. ----- ----- ----- ----- ----- ----- ----- <u>3명</u>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u>2명</u>	마. ----- ----- ----- ----- ----- ----- <u>3명</u>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사. <u>관세·법률·재정에 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u>
<u><신 설></u>	아. <u>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9명 이내의 사람</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략)

⑥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제1항제2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④ ----- 위원-----

-----.

⑤ -----
----- 위원-----
-----.

1. ~ 4. (현행과 같음)

⑥ -----

----- 제1항에 따른 위
원-----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위원장은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장 또는 위원 -----

5. -----

⑦ ----- 다음 -----

--- 구분에 따른 안전-----

----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안전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안전

⑧ ----- 해당 위원장
및 -----

---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
람 7명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
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7명

⑨ ~ ⑭ (생략)

<신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나. 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
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
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7
명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제1항제2호나목부터 아목
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
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
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
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7명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4(관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118조의4제9항에 따른 관
세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
원회 : 제144조의3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마목까지에 해
당하는 31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
회: 제144조의3제1항제2호 나
목·다목·마목·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37명 이내의
사람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해당 관세심사위원
회를 대표하여 관세심사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관세청 : 제144조의3제1항제2
호아목의 위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2. 본부세관 : 해당 본부세관의
세관장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
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
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일 7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
게 통지해야 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
호의 안건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
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
의 안건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
당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에 따
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
원회: 제144조의4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원 중 회의마
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민
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
여야 한다)

2.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
회: 제144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회의마다

제144조의4 (생 략)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민간
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
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
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
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⑨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
회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에
서 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⑪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
해서는 제144조의3제5항·제6
항·제11항·제12항·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의5 (현행 제144조의4와
같음)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법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사항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제2호의 본부세관 외의 세관(이하 “일선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9명 이내의 위원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삭 제>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차장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본부세관장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일선세관장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
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
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
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 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
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
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0명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8명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6명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	
---	--

<삭 제>

여야 한다.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48조의2(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	
--	--

<삭 제>

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
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
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
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
 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
 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
 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

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 야 한다.

제149조(수당)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
세판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
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
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

<삭 제>

제192조(특허기간) -----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

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

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 3. (생략)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 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
----- 송부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삭제>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 물품의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36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 등의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분류·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의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물품 발송인 및 물품수신인의 성명
과 주소

2. 3. (생략)

③ ~ ⑥ (생략)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세운송, -----

-----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
-----.

1. -----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물품의 화주-----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물품의 화주가 -----

----- 않았음-----

----- 제출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
----- 되거나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

-----.

②-----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
-----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

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 ⑦ (생략)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⑨ (생략)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허용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제7항 각 호

⑨ (현행과 같음)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통관 등 ① -----
----- 전자상거래물품
에 대해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신 설>

<신 설>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문번호 및 구매일자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
고유부호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물품의 결제금액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사상
거래 물품의 통관과 물품검사를
위해 수입신고 전에 제공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
되는 시점에 제공할 것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할 것

④ 법 제2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신설>

----- 해야 -----
-----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제공절차 등) ① 법 제3
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
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
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라고 한다)로서 관세청장이 정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
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장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
관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
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3.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사
용기간 및 사용자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용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신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사용목적

<신 설>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신청 이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 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

<신 설>

와 관련한 관세·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
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
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3조의3(체납한 횡수 및 체납
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횡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
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